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혜지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2733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사유

- 「자동차관리법」이 2024년 2월(시행 2025년 2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중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적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 중 등록번호판의 봉인 업무를 제외하고 제작·발급 업무로 함(안 제2조제1호)
-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6. 7.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¹⁾
 - 개정된 상위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대행자 업무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장 선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견 없음

1) 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택시정책과-20052, 2025.6.4.)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고 대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관련(안 제2조제1호)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정비·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²⁾는 그간 실효성이

2) 자동차 봉인제 개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관련 보도자료, 2024.2.19.)

- 개념 : 자동차(이륜차 포함)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
- 목적 :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1962년)
- 발급 : 자동차 최초 등록 후 운행을 위해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봉인이 파손되거나 번호판 탈착 시 재봉인
- 처벌 : ①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떼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②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원) 등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히 IT 기술 발달에 따라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이 낮아졌으며,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봉인제도의 낮은 실효성에 따라 '24년 2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³⁾되어 '25년 2월부터 시행되었음
-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봉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편리한 번호판 발급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보여짐

■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안 제6조제3항 등)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⁴⁾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3)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항

-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 주요내용: 봉인제도 폐지

4)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3조⁵⁾ 등에 따라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를 위해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23년 12월 심의위원회⁶⁾를 통해 권역별로 대행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24년 10월부터 신규 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참고 : 서울시 발급대행자 현황

사업구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강남권	이창기업(주)	김용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9
강서권	오토플러스(주)	송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3길 44 지하1층
강북권	한국비주얼(주)	전점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77-1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대한 사항과 함께

5)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6)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택시정책과-43654, 2023.12.5.)

회의 출석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⁷⁾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7)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